

협력적인 노사관계

-중국의 외자도입초기의 문제점이 북한에 가지는 의미-

이마무로 히로코(今村 弘子)*

번역: 양 만 식**

I. 중국과 북한의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상이점

〈유사점〉

	중 국	북 한
출자비율	최저비율만 100%외자인가	최저비율만 100%외자인가
제품의 수출	의무부과	의무부과
동포의 투자	홍콩마카오동포의 투자장려	해외동포의 투자장려
존속기간	명기	명기

〈상이점〉

	중 국	북 한
소득세(일반)	30%	25%
소득세(특구)	15%	14%
면세기간	2년면세, 3년반감	3년면세, 2년감면

1984년 9월에 북한은 외자도입을 위한 법률을 발표하였으나 1983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단이 23회에 걸쳐 대표단(합계 500명)을 중국에 파견, 경제특구를 시찰하였음.

* 토야마대학 극동지역연구센터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II. 중국 경제특구의 특징

1. 수출가공구의 역할
2. 경제개혁의 실험장
3. 홍콩(深圳), 마카오(홍콩)의 반환에 대비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지대
4. 深圳에서는 제2국경선이 설치됨
5. 물, 전기, 가스, 통신설비가 통하고 있으며 토지가 정비됨(인프라의 정비완료-四通一平)
6. 처음에는 「수혈」(중앙정부에 의한 재정투입으로 건설이 진행됨)에 의한 발전과 비판-1980년대 중반(홍콩의 인건비상승으로 홍콩의 제조거점의 역할을 담당함)

III. 나진(羅津), 선봉(先鋒)의 외자유치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

1. 국제적 협력의 어려움

UNDP의 관계자(1994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러시아의 비협력적인 태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길림성 휘춘(珲春)의 개발에 전력을 다함(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아님)
그 휘춘과 나진, 선봉은 경쟁도 보완관계도 없다.

2. 법률적인 구체성이 부족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관하여”

1993년 4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개성에 관한 법률 “설치에 관하여”(2001년) 「공업지구법」(2002년), 「세금법」(2003년)

3. 계획이 너무 추상적

① 간접비가 높다.

-제3국으로의 중개료가 높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의한 수송의 경우 수송비가 너무 높다.

②기술자가 북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나 서면에 의한 지도에 의할 수 밖에 없다.

③프로젝트의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IV. 중국의 외자도입초기에 외자측이 부담을 가진 문제

1. 경제정책에 변경은 없는가(정책연속성은 있는가, 문화대혁명처럼 정치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가)

2. 행정의 과도한 간섭(생산과 관계없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교섭장소에 동석)

3. 내부규정(세칙이 발표된 1984년까지 다발한 문제)

-법률해석, 운용이 말단조직까지 철저하지 않다.

4. 인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중국-“도장여행”)

-3개월 이내에 인가여부가 결정(연락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지 내의 나무를 베려는 경우에도 30개의 인감이 필요)

5. 로열티 등 무형의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 되는가.

6. 토지, 건물 등 중국 측 현물출자분에 관한 평가를 알 수 있다.

7. 원재료나 에너지의 조달은 순조로운가, 교통·통신은 편리한가,

-「당해 토지에 정전이 없다」는 것이 매물로 나오고, 철도중심의 교통으로서(1980년대까지는) 철도운송의 8할정도가 석탄을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증을 얻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의 혼선이 많았다. 예컨대 일본에서 국제전화를 거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북한의 경우 자의적으로 통신을 차단할 가능성은 없는가).

8.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동사장은 중국측(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이며, 그러나 원재료조달에서는 커백션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9. 자유스러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성(노동력 알선기업이 알선, 외자 측은 알선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알선하여 주는 가 ·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닌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가(30일전에 통지만하면 괜찮은가)

-알선기업으로부터의 간섭은 없는 가.

-알선기업에 의한 임금의 중간임금의 착취문제는 없는가

10. 임금은 진정으로 낮은가.

- (복지비, 아파트의 건설, 생산성의 문제)-임금과 같은 액수정도의 복리후생비가 필요. 현재에는 사회보험료를 약20%로 하는 경제개발구가 많다(동북지방에서는 30%이상의 지역도 있다), 기타 연회비, 투자고문비, 법률상담비, 조사비, 연수비, 관리비 등

- 개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50달러뿐인가(교통비, 복리비 등은 어떠한가)

11. 유럽의 상관습에 익숙하지 않다(홍콩이나 화교, 중국인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와의 가교역할)

- 「계약을 준수 한다」.유리한 조건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우선할 것인가.

12 외화균형(수출의무)

-인민원(元)에 대한 교환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판매의 경우 이익이 있더라도 일본에 송금할 수가 없으며 수입원재료의 조달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외화조달센터의 설치

13 FS(외자측에는 조사의 자유가 없으므로 중국측에 의뢰하게 되는데, 투명성이 결여됨)

14. process innovation의식이 희박(개선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문화혁명시대에는 「붉은인가 순수함인가」라는 영향도 있었다.

15 노동의욕의 문제

-불량품을 가지고 귀가하지 않는다

-유니폼이나 헬멧의 착용.

-인사를 한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의식.

개 성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체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1979년에는 합변법이 시행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당시에는 국유기업이 중심이었지만)도 유럽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것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 측이 유럽의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해한 후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한국기업이 100% 외자기업이라는 실태를 생각하면, 확고하게 다져진 사회주의 기업과 합변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에서 이번에 본인은 중국으로의 초기진출에 대한 어려움, 특히 노사(勞使) 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발표하고자 하며, 북한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합변법, 또는 경제특구는 중국의 합변법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 북한 측은 부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83년 김정일이 심천(深 土+川: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경제특구)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23번이나 합변법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예컨대 외자의 출자비율에 대한 하한만을 정하고 있어서 100% 외자계 기업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당시 발전도상국의 합변법에서는 외자의 출자비율을 49%로 정하고 있었다)이나 수출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중국이 화교나 중국인의 출자를 장려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해외동포의 출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을 의식하여, 일반지역의 세율을 25%로 하여 중국의 경우보다 5%정도 낮게 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의 세율은 14%로 하여 중국보다 1% 낮다는 점, 중국의 면세기간은 2년, 세율반감기간은 3년인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여 조금이지만 중국보다는 유리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 수가 있다

논문의 IV의 부분의 중국이 외자도입초기에 외자 측을 약간 괴롭게 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듯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

명하고자 한다.

먼저 9번인데, 자유스러운 고용이 보장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률에서는 노동알선기업이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걱정이 되게 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알선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1980년대 초기에 일본으로 연수를 올 인재를 중국이 뽑게 되었을 때 공산당 고급간부의 아들을 뽑아 연수를 진지하게 받지도 않고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전자제품을 살 것만을 기대하는, 즉 현장과 관계없는 인재가 연수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국을 하더라도 기술발전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알선기업으로부터의 인재알선도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가 알선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으며, 필요한 기능보다는 사상이 견고한 자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필요 없는 인재라고 하여 해고를 할 수 있었을까? 법률에서는 30일전에 통고를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고를 하면 새로운 인재를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선기업으로부터의 간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또한 알선기업에 의한 임금의 중간착취가 없을 것인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월50달러가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불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달러로 노동자에게 지불하여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높은 급료로 인해 열심히 일을 하려는 마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의 그렇게 될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환비율이 이용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현재와 같이 교환비율이 폭락하고 있는 ~ 2002년 7월에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원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올해에 들어와서 8개월 만에 2분의 1로 더욱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 사람들이 감추어 두고 있던 인민元 이나 달러가 최저가치로, 금년부터 상당한 기세로 폭락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실세비율이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공식비율로 환산하여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급료인가”라고 할 것이며, 일을 하려는 의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걱정되는 점이 있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유럽과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당의 의향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1990년대 초까지 토요일 오후에는 「학습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원래 이것은 문화대혁명시대부터 일반인들의 의리에서 출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동조합이 생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에서 고용관계에 간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중국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지만, 1980년대 초에는 반대로 외자계 기업은 급료는 좋았으나 노동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성공보수에 대한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지도 문제로 될 것이다. 생산성과의 균형에서 볼 때 진정으로 중국의 임금에 낮은 것인가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노동자용의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식사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발비 등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이 들게 되며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임금에 대한 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로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이야기이지만, 양로보험(연금적립금)이나 실업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체로 임금의 20~30%정도 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임금 이외의 명목비용이 필요하다면 「저렴한 노동력」을 기 위한 공장진출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의욕도 문제로 될 것이다. 문화대혁명시대에 열심히 일을 하면 “너는 사상(紅)을 떨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아직 그 당시의 기억이 남아 있는 시대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악(惡)」이라는 풍조가 있다. 즉 현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합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반대로 생산량은 증가되었으나 급하게 만들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불량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해결된다(컨베이어 시스템에서도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

현재의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이 공급과잉상태이지만, 물건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불량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팔아 치우는 사태도 있었다. 양복 등 체격이 맞지 않더라도 입을 수 있으면 양복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왜 체격에 맞추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불량품을 몰래 판매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 내에서만 판매된다면 그나마 문제가 적겠지만 중국 등으로 가지고 나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품제조기업에서는 청결한 유니폼으로 갈아입히고 모자를 쓰게 하며,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에서는 헬멧을 쓰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어야만 했다. 근본적인 생각은 「기준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은 물건을 만들려다 오히려 기준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연구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다음에 기준량이 힘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 스스로의 목을 죄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면 그만큼 보상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선기업에 방해받지 않는 장려금시스템이 필요하다)

품질의 문제, 즉 이것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즉 완성된 제품은 유통부분이 일괄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노파심에서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중·한 국교수립 직후, 한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할 당시 마음에 걸린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실수했던 것을 북한에 진출을 할 때에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공통 언어라는 점에서, 중국 내의 조선족에게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진정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늦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동포이며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지만 분단 된지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생각하는 것도 변했으며 더구나 사회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먼저 상대방의 문화나 발상법 등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한 때 한국기업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잔업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 중국인들이 싫어한 것은 관리직을 맡고 있었던 한국인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종업원들에게 너무나 호통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내의 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집약산업 등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히 해외진출(대 중국진출)을 결정하고 그 때문에 해외에 부임하려는 준비도 없이 합변기업이라는 일국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채량권이 많아진 것에 대한 쾌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해외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기업 중에는 이러한 실패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동포라는 점에서 마음가짐이 해이해져 버리고 마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재차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